

1. 개정이유

국내거래 증빙자료인 구매확인서의 발급자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도 추가하고,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모두 포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내거래 증빙자료인 구매확인서의 발급자 현행화 (안 제5조)

구매확인서 발급자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추가함

나.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명확화 (안 제12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명확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장이”를 “장 또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1항에 따른”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내국신용장등) 법 제5조제3 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이와 유사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5조(내국신용장등) ----- ----- ----- -----.
1. 외국환은행의 <u>장이</u> 내국신용 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구매확 인서	1. ----- <u>장 또는 「전자 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6 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 업자가</u>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대상)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u>제2조제1 항에 따른</u>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대상) ----- ----- ----- <u>제2조의 규 정에 의한</u>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